

창원지방법원 2024. 5. 13 선고 2023가단12537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4. 4. 15.

판 결 선 고 2024. 5.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21. 1. 25.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9. 소외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2. 11.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9. 소외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2021. 3. 31.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13939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3. 31. “D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21. 1. 25.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1. 4. 2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2년경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써준 사실, 피고가 2012. 2. 21. 원고의 배우자인 B 명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불각서(갑 제5호증의 내용과 동일한 것)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언